

# 감사보고서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202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2024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4년 04월 09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감사 설재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226호)

감사 김한웅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127호)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법인사무국 관재과장

성명 강정수

직명 동명대학교 사무처장

성명 류화영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3회계연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2023회계연도에 예산전용된 총 4건(총금액 29,600천원)에 대하여 내부결재는 적절히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사회 보고절차는 3건만 이루어졌고, 소액이기는 하나 나머지 1건(500천원)의 경우 이사회 보고절차가 누락되었음.</p>	<p>1. 2023회계연도에 예산전용된 총 4건(총금액 29,600천원) 중 이사회 보고 누락 된 1건(500천원)에 대하여 2024. 4. 24. 제2024-5차 이사회 보고 완료하였음. (※ 회의록 참조)</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서 의 택



직인 (사인)

[별지 제3호 서식]

## 동명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3회계연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외부겸직 연장 승인 누락</p> <p>교원이 외부겸직을 하는 경우 본인이 외부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계공학부 안일혁조교수는 겸직기간(2020.6.1~ 2023.5.31)이 경과하였음에도 겸직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함.</p> <p>겸직기간 종료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알림 메일을 발송하는 등 학교 ERP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p>[시정조치계획]</p> <p>외부겸직 신청 또는 연장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토록 하며, 주기적인 알림에 대해서는 현행 그룹웨어와 CS시스템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겠습니다.</p>
<p>2. 학술연구지원규정(“규정”)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권고</p> <p>가. 현황</p> <p>2018년~2021년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연구과제현황 “파일(“파일”, 연구비관리 현황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검토함</p> <p>1) 연구과제명과 논문명이 상이한 연구</p> <p>2018년~2021년기간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연구비 선정시 제출한 연구과제명과 연구 결과물인 논문의 제목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견 됨.</p> <p>이는 연구계획의 변경을 금지한 “규정” 11조가 2015.12.30. 삭제되어 연구과제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가 없어짐에 기인함.</p> <p>또한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가 연구과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임.</p> <p>2) 교외연구비 또는 산업체용역과제 수주의무 준수</p> <p>규정 “제13조 4항에 따라 연구개시 3개월후 부터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4개월이내에 과제책임자로서</p>	<p>[시정조치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6월까지 「교내학술연구지원규정」을 개정할 예정 연구기간 내 계획 변경, 연구비 회수기간 명시, 연구계획과의 유사성 확인절차, 회수 건 발생시 급여공제, 휴직/소청 기간 명시</li><li>2. 전산시스템 개발 및 개선 등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2024학년도 하반기 중으로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내학술연구비 관리 및 결과보고 시스템 전산 보완 계획</li><li>- 연구개시후 3개월 경과전에 수주한 용역건은 타 과제로 수정 인정하고, 파일오류 예방을 위한 교내학술연구비 관리 강화</li></ul></li><li>3. 회수하지 못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토록 만전을 기하며, 유사한 건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개선토록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원 퇴직 시 교내학술연구비 완료 확인서 제출 등 절차 보완</li></ul></li></ol>

국가연구개발사업등 간접비가 산정되는 교외연구비  
공모사업 또는 산업체용역과제를 1과제 이상 수주하  
도록 규정됨(기간에 대한 규정은 수차례 변경이 됨).

2018년~2021년 기간 ” 파일 “상 연구개시후 3개월 경  
과전에 수주한 외부 의무용역건이 있음

### 3)연구비 미회수 및 지연회수

2018년~2021년 기간 ” 파일 “상 기한내 연구논문 미  
게재, 외부용역미수주 등으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하  
나 회수하지 않은 건이 있음.

연구비 회수의 경우 회수기간이 1개월 5일부터 10개  
월까지 회수기간이 상이함.

퇴직사실등을 알지 못하여 미회수한 연구비가 있음.  
퇴직시 그룹웨어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부서에 퇴직사  
실을 알리고 미회수 연구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4)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연구과제현황(” 파일 “)관리

연도별로 연구비 관리부서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이 상기 엑셀 시트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수작업으  
로 사후 관리하고 있음. 연구종료후 연구자가 그룹웨  
어(office)를 통하여 연구결과 보고하면 관리부서는  
논문게재사실을 파악하여 수작업으로 ‘파일’ 에 기  
재.

외부용역 수주 현황은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통합시  
스템(web cash)에서 연구자 개인별 외부용역사실을  
파악하여 기재하며 개인이 여러건의 외부용역을 수행  
한 경우 어떤것이 연구과제 의무 용역건인지 파악이  
어려움.

상기 ‘파일’ 시트의 2018년~2021년 기간 검토 결과  
관리부서에서 ” 파일 “을 부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최  
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지연— 본 시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상급자가 필요.

### 나. 개선방안권고

1)학교의 그룹웨어에 연구비 지급, 연구진행, 사후관리  
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시스템 “)을 set up.

<p>과제번호별로 관리필수사항(연구기간, 논문인정기간, 논문게재기한, 교외연구비수주 의무기한, 연구과제, 논문명, 연구과제와 논문의 일치여부 확인등)을</p> <p>각 단계별로 연구자 본인이 증빙을 첨부하여 ” 시스템 “에 기입하여 연구지원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 가능하게 함.</p> <p>외부의무 용역의 경우 수주시 관련 연구과제에 본인이 ” 시스템 “에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과제별 외부의무용역 수주여부를 파악가능하게 함</p> <p>연구의 각 단계별로 ” 시스템 “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연구자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어 시행할 의무사항을 사전 고지도록 함.</p> <p>외부용역의무기한등이 경과하면 ” 시스템 “에서 자동적으로 연구비회수 해당 여부를 연구지원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연구비 회수에 해당이 되면 즉시 회수절차에 착수함</p>	
<p>2)과년도 지급된 연구비에 대하여 감사팀에서 연구비 사후 관리 현황, 연구비 회수상황, 미회수 연구비 회수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p>	<p><b>[시정조치계획]</b></p> <p><b>2023학년도 법인 내부감사 지적사항(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및 외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지원·관리실태 점검 요구)에 따라 2024년 5월 2일 대학감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 및 외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지원·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2024학년도 대학 정기감사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통과되었으며, 대학감사규정에 의거 2024년 5월 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b></p>
<p>3)학술연구지원규정의 개선여부를 검토</p> <p>연구계획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재신설</p> <p>연구종료후 게재된 논문의 당초 연구과제와의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 규정을 신설</p> <p>연구비 지급이후 사후관리 책임주체를 명쾌하게 규정</p> <p>연구기간중 휴직,소청등의 경우 각종의무 기한의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p> <p>연구비 지급시 향후 연구비 반납시 급여, 퇴직급여에서 일정기간내 상계하여 회수하는데 동의하는 계약서를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       피감사기관장                      <b>동명대학교</b>    총장    전호환    직인 (사인)        </p>	